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2가단259627(본소), 2023가단259174(반소) 판결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박경수, 김명근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조정현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현

담당변호사 이해미

피고1.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D

2.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연

담당변호사 안수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신건수

변론 종결2024. 9. 12.

판결 선고2024. 10. 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2,763,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0.부터 2024.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E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B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4,9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98,761,9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부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인천 서구 F, G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분양대행사이다.

나. 피고 E은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E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 모집 업무를 하면서 피고 C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E이 소개한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E의 소개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어 피고 C 소속 직원들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2021. 11. 17. 이 사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1,171,900,000원(그 중 계약금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이하 원고가 피고 B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 E과 사이에서 분양대금을 1/2씩 분담하여 공동매수하기로 하였다. 위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C 측에 도장을 교부하여 이 사건 상가호에 관하여 기 체결된 공급계약상의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전 매수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하고, 원고가 날인한 권리의무 승계내역서를 '이 사건 승계내역서'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계약서

※ 본인은 다음 사항 등 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함

1. 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의 구두약정은 무효임
2. 본 계약과 관련된 대금은 반드시 H(주)가 예금주인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3.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 분양상담 시 분양요원과 구두 또는 서면상으로 이루어진 특약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함.
4. 분양시점에 설명한 잔금 융자 및 예상월세, 예상수익률은 예상이며, 준공 후 고객의 신용도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확인자: 매수인(을) I (날인)

■ 분양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 합계 1,171,190,000원

계약 시	20. 6. 10.	20. 6. 10.	20. 7. 10.	20. 10. 12.	21. 1. 11.	21. 4. 12.	준공시
공급 금액	110,665,74 0	110,665,74 0	110,665,74 0	110,665,74 0	110,665,74 0	110,665,74 0	110,665,74 0
부가 세	6,453,260	6,453,260	6,453,260	6,453,260	6,453,260	6,453,260	6,453,260
합계	117,119,00 0	117,119,00 0	117,119,00 0	117,119,00 0	117,119,00 0	117,119,00 0	117,119,00 0

※ 잔금 시 대출이 가능하나, 개인의 신용과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약정된 잔금이 대출금으로 부족할 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조(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처 등)

① 을은 분양대금 일체(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를 하기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J조합(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H(주)

제2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연 17%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의 연체시점은 준공일의 익일부터 발생한다.

② 갑이 을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을이 부담할 연체료(연체이자), 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한다.

제6조(계약해제)

①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30일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제3항의 경우에는 갑이 각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⑤ 갑은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을이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중도금대출원리금, 위약금, 갑이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광고비, 기타 부대비용을 공제한 후 을에게 반환키로 하며, 기납부한 금원에 대한 기간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권리의무승계 및 양도 양수)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 및 정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는 갑, 정의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양수인이 함께 출두하여 기명날인하고 승계할 수 있다. 또한 갑, 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하여는 갑, 병, 정에게 어떠한 효력도 없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중도금대출)

③ 중도금대출 무이자

1.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을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 80% 중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60%는 무이자대출(부가세 포함)로 진행한다. 단, 중도금 7차(10%), 8차(10%)는 현금 납부토록 한다.

2. 각 회차 중도금 대출실행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중 갑이 지정하는 준공시기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는 갑이 대납하며 갑이 지정하는 준공일 이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을이 부담한다.

⑤ 을은 대출을 받은 후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이 부담한 대출이자를 정의 수납계좌에 선입금하여야 한다. 만약 대출이자의 선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제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이 납부한 공급대금에서 위약금(분양가의 10%), 대출이자(연체료 포함), 각종 수수료 및 부대비용, 대출원금의 순으로 공제한 잔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단, 을이 납부한 공급대금이 위약금, 대출이자, 각종 수수료 및 부대비용, 대출원금을 합한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을은 부족한 차액을 별도로 갑 또는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매도자(갑) 피고 B

매수자(을) I

시공사(병) K 주식회사

자금관리사(정) H 주식회사

권리의무 승계내역서

1. 본인(양수인)은 을(양도인)이 갑과 계약한 전기 표시 재산을 을로부터 양도받음에 있어 갑, 을, 병, 정 간에 체결된 원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할 것을 서약하며, 차후 양도 양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과 본인(양수인)에 귀속되고, 갑, 병, 정은 하등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함.
2. 양수인은 수분양권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현황, 본 근린생활시설의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여부, 양수인의 대출승계 가능여부, 제한사항(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이 설정되었는지 확인 후 권리의무 승계를 하였음.
3. 양도·양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도금 납부 및 연체사항, 대출관련사항, 제한사항(압류, 가압류 등)등의 기존에 발생한 문제 및 향후 발생할 모든 제반문제는 전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갑, 병, 정에게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본 서약서의 날인은 아래 권리의무승계시의 인감날인으로 갈음한다.

승계일 21년 11월 17일

양도인 I (날인)

양수인 원고 (날인)

승인(시행사) (날인)

승인(신탁사) (날인)

라. 원고는 피고 E과 피고 C를 통하여 계약금 7,000만 원 상당(그 중 원고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33,973,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일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 절차 완료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2년간 매월 276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임대수익보장서를 교부받았다.

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은 L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납부되었다.

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22. 3. 18. 사용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22.

4. 30.을 입주지정기간 말일로 정하여 잔금의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아. 피고 B는 2022. 6. 8.경, 2022. 6. 22.경 및 2022. 7. 11.경 각 원고에게 잔금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22.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3, 4호증, 을나 제1, 2, 3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C의 임·직원과 피고 E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3,500만 원 정도만 실질적으로 부담하면 중도금, 잔금의 80% 대출이 보장되고, 월 280만 원 상당의 임대수익이 보장되며, 잔금 5,000만 정도만 부담하면 수익성이 좋은 상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 C 측은 원고의 도장을 가져가 어떠한 서류에 날인한 것인지 원고에게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 및 권리의무 승계내역서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나중에야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실제로 잔금 대출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약속된 80%가 아닌 60%까지만 가능하였다.

원고는 피고 C와 E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80% 잔금 대출에 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피고 E은 이 사건 분양계약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따라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34,973,000원을 반환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로써 이 사건 상가의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1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 이후 피고 B가 여러 차례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해제통지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이 사건 분양계약 제13조 제4항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합계 198,761,971원(=중도금 대출이자 25,736,221원 + 중도금 대출수수료 7,027,140원 + 분양대행수수료 165,998,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피고 C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잔금 대출이 80%를 보장한 사실이 없고, 계약금을 할인해주면서 종전 수분양자 I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임을 분명히 설명하였다. 또한 이 사건 권리의무 승계내역서에 시행사 및 신탁사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위 문서의 복사본만을 원고에게 주었고 추후 신탁사 등의 도장을 날인한 후 원본을 전달하는데, 그 기간은 통상 2~3주 정도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

라. 피고 E

피고 E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개략적인 홍보 내용을 전달받았을 뿐, 수익성, 계약조건, 대출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에게 잔금 대출이 80%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고 E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 C 측으로부터 원고와 공동매수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분양대금의 80% 상당의 담보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 37,973,180원을 부담하였다.

피고 E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아니고,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C 측이 잔금 대출이 80%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피고 E도 원고와 동일하게 주장하기는 하나, 피고 E은 원고와 이 사건 상가를 공동 매수하기로 한 입장에서 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②

오히려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 분양상담 시 분양요원과 구두로 이루어진 특약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함, 분양시점에 설명한 잔금 용자는 예상이며, 준공 후 고객의 신용도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잔금 시 대출이 가능하나, 은행의 신용과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약정된 잔금이 대출금으로 부족할 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권리의무 승계내역서에는 '원고가 종전 매수인 I이 체결한 원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할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약정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③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C 측으로부터 잔금 대출이 80%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려면 원고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원고와 피고 E의 주장 외에는 위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C 측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문서에 날인하였는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서도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 당일 피고 B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간 일정 금액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임대수익보장서는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시된 처분문서 없이 분양대행사 임·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설명이 곧 계약내용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기망행위 또는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피고 E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 E와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고 피고 E이 어떠한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인지를 전혀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중도금 대출이자 및 대출수수료 상당액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입주지정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B가 2회 이상 원고에게 잔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한 사실, 원고가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B가 이 사건 해제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분양계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올라 제5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1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중도금 납부를 위한 대출금에 대한 준공시기까지의 이자 및 대출수수료로 합계 32,763,361원(=대출이자 25,736,221원 + 대출수수료 7,027,140원)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대출이자 부담약정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약정 또한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 B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대출수수료 상당액을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290818 판결,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합계 32,763,361원(=대출이자 25,736,221원 + 대출수수료 7,027,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 청구에 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6조 제5항 및 제13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해제될 경우,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에 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액인 165,998,610원을 위약금 조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 제6조 제5항 및 제13조 제5항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가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공제할 금원으로 중도금 대출원리금, 위약금, 분양대행수수료, 광고비, 기타 부대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최초 수분양자 I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분양계약 관련 처분문서에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요율 내지 산정기준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통상

부동산 거래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대금의 10%가 몰취되고 이로써 손해가 전보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 상가 분양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될 경우, 분양대금의 10%로 정한 위약금 외에 분양대금의 15% 상당의 분양대행수수료까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 ④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최초 분양계약에 따른 매수인 I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 C 측이 위와 같은 계약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피고 B가 이 부분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32,763,36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대납일 이후로서 피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7. 1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지숙